정년퇴직자와
기업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2024년

정년퇴직자 고용연장
중소기업 지원사업

사업 개요

지원대상 만60세~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

접수기간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

선정방법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(선착순)

-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

지원내용 신규 채용(재연장)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

-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: 90만원(3개월) × 4회
- **지원기간** : 2024. 12. 31.까지 (2025년 사업 지속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)
- **지급방법** : 법인기업(법인계좌), 개인기업(대표계좌)

매월 말일까지 접수 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.

예시1 3월 31일까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
2024. 4. 1. ~ 2024. 6. 30. (6. 30.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)

예시2 4월 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
2024. 5. 1. ~ 2024. 7. 31. (7. 31.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)

-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
- 2회차부터는 퇴사, 관외이전(기업, 개인),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
-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
- 잔여분은 2025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

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(1사업주 1사업장 원칙)

- 고용보험 취득일(제출일 기준)이 1년 이상되고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%이내(소수점 이하 올림)
-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

지원 요건

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

중소제조기업

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(공장)이 소재

기업형태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)

- **영위업종** :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(500㎡ 미만 미등록공장 제조기업 포함)

※ 단,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

- **고용기준** : 만60세~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

※ 2024년 기준 1959. 1. 1. ~ 1963. 12. 31.에 해당되는 근로자

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

ITP 인천테크노파크 INCHEON TECHNOPARK

정년퇴직자와
기업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2024년

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

지원 요건

해당 근로자

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
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을 충족

①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채용하거나 2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

② 근로계약 종료후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: 사업참여 신청이후 재계약시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

※ 사업 참여 신청 시 신규로 2년 이상 (만60세 이후 수차례 계약갱신 포함) 채용되고 계약종료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 포함. (단, 기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자는 제외)

연 령 만60~64세 [2024년 기준 1959. 1. 1 ~ 1963. 12. 31. 출생자]

근무조건 주당 30시간 이상을 충족

지원제외
- 정부(지자체 포함)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
- 해당근로자를 산출인원으로 하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는 기업
  (예시 :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일자리안정자금, 고령자고용지원금, 고용장려금(고용유지지원금, 고용촉진(창출)장려금,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기업(사업주)이 지원 받는 제도) 등.
  단, 해당근로자가 기간의 중복만 없으면 지원 가능)
- 특수 관계자 제외 : 사업주와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, 4촌 이내의 혈족, 인척
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,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
- (기업)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제외, (근로자)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
- 임원 제외 (단,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)
-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,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. (예시 : 인천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)
-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
-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
- 승인후 지원금 신청시 서류 미제출 등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고용유지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간 계속 고용여부 확인
- 2년 이상 계속고용 유도를 통해 고용안정 도모

신청 방법

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접수사이트 (http://bizok.incheon.go.kr)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

기업지원 ▶ 기업지원사업신청 ▶ 지원분야(인력선택) ▶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

문 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☎ 032-725-3032 ✉ hgkim@itp.or.kr

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

ITP 인천테크노파크 INCHEON TECHNOPARK